

# I. 반론보도청구사례

청구인들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론보도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22.자 판결 (99카합600)

##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1999년 4월 22일 국제크리스천연합과 이 단체 총재 겸 목사인 정 씨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피청구인은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법 제41조 제3항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걸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청구인들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보도할 수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SBS가 1999년 1월 7일과 8일 8시 뉴스를 통해 ‘탈퇴신도 납치극’, ‘종교집단 성 파문’이라는 제하로 청구인 단체 소속 신도들이 탈퇴하려는 신도에 대한 납치극을 벌였고, 목사인 청구인이 여신도들과 집단 성 관계를 가졌다는 방송을 하자 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9서울중재40)을 하였는데,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되자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문

사건 : 99카합600 반론보도

청구인 : 1. 국제크리스천연합

대표자 총재

2.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청구인 :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송 도 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강 훈, 서 현, 홍지욱, 김재호, 최혜리

변론종결 : 1999. 4. 1.

주문 : 1. 피청구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방송하는 21:00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청구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각 금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SBS 텔레비전의 '8시 뉴스' 프로그램의 첫머리(8시 정각)에서 상단 화면에는 두 줄로 "국제크리스천연합 정 총재의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2 반론보도요구문을, 위 방송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SBS 텔레비전의 '8시 뉴스' 프로그램의 첫머리(8시 정각)에서 상단 화면에는 두 줄로 "국제크리스천연합 정 총재의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3 반론보도요구문을, 각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각 진행자로 하여금 각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각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청구인이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은 위 각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일까지 각 청구인들에게 각 금 1억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 국제크리스천연합은 예수교대한감리회(진리)교단 산하의 기독교청년대학생선교단체이고, 청구인 정 은 청구인 국제크리스천연합의 총재 겸 목사이며, 피청구인은 방송매체를 운영하면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999. 1. 7.자 보도내용

피청구인 방송사는 1999. 1. 7. 20:00부터 방송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8시 뉴스'에서 「탈퇴신도 납치극」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즉, 피청구인 방송사 소속의 앵커는 서두에서 "한 신흥 종교단체에서 탈퇴하려 한 20대 여성이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집에 질려 있으면서도 겪은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어서 이를 취재한 기자는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으스스한 골목길,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더니 28살 황모 여인을 납치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행선지는 충남 금산, 동서크리스천이라는 종교집단입니다. 납치된 황씨는 승합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추는 동안 중앙분리대를 뛰어 탈출하려다가 전치 3주의 폭행만 당했습니다. ...황씨는(동서크리스천연합 성전에) 6개월 가량 머물면서 종교를 믿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교주 정모 씨의 기이한 행동에 염증을 느껴 최근 탈퇴를 결행했고 갖은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 온 끝에 납치극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서크리스천연합은 지난 80년 JMS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신흥종교집단으로 금산의 본부 안에 100여 명이 넘는 젊은 여신도들을 집단

으로 거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납치극을 벌인 32살 김모 씨 등 4명을 폭행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종교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그 배후와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위 황모 여인과의 인터뷰장면과 함께 방영하였다.

다. 1999. 1. 8.자 보도내용

피청구인 방송사는 또 1999. 1. 8. 20:00부터 방송된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종교집단 성과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였다.

즉, 피청구인 방송사 소속의 앵커는 서두에서 “어제 여덟 시 뉴스에서 한 종교집단에서 탈출하려다가 곤혹을 당한 여신도 얘기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직후부터 많은 제보가 잇달았는데 그 가운데는 이 종교 여신도들과 성 관계를 갖는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어서 이를 취재한 기자는 “교단을 떠난 여신도를 재교육시켜야 한다며 납치극을 벌였던 피의자들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충남 금산의 교단본부를 찾았습니다. 교주가 태어난 자리에 2만여 평의 산을 깎아 만들고 있는 성전은 그 화려함을 자랑하며 10년째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난 80년 JMS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 교단은 이미 수 차례 이름을 바꿔 현재 동서크리스천연합으로 불리며 신도 수만 해도 전국에 10여 만명에 이릅니다. ...총재 또는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주가 다니는 곳에는 항상 여신도들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총재가 수년간 여신도들과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평소 젊은 여신도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며 모델처럼 예쁜 여신도들만 골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다는 주장입니다.”라는 보도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 신도들과의 인터뷰 장면과 함께 방영하였다.

계속하여 위 취재기자는 “교단에서 만든 각종 비디오 홍보들에서는 하느님보다 정총재에 대한 존경과 숭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단 내에서는 정총재가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여신도들은 총재와의 성관계가 마치 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입니다. 신도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신흥종교집단,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총재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 납치사건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라는 보도를 “정 은 재림예수이고 1999년 7월 14일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정 )이 재림예수라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럴 바엔 나의 모든 것을 바치자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라는 등의 말을 하는 전 신도와의 인터뷰방면과 함께 방영하였다.

##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방송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위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방송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별지 제2, 3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 중 당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별지 제1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론보도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걸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그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반론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별지 제1 반론보도문의 방송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피청구인이 반론보도를 명한 기간 내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그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22.

재판장 판사 길 기 봉

판사 이 건 배

판사 고 창 후

□

어린이집 변칙운영 실태를 증언한 학부모에게 보복을 가했다는 취지의 기사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인 원고가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5. 12.자 판결 (99가합2430)

###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소순무 부장판사)는 1999년 5월 12일 청룡어린이집 원장인 이 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사실적 주장의 공표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한겨레신문사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이 1999년 2월 2일자 25면에 『어린이 집 ‘비리’ 증언에 분풀이』라는 제하로 구의회의 국·공립 어린이집 감사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비리사실이 적발되자 구의회는 원고와 자모회 간부들과의 자리를 마련했고, 이에 자모회 간부들이 평소 생각해 온 어린이집의 변칙운영 실태를 증언하자 원고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증언한 학부모들한테는 재등록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1999년 2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9서울중재38)을 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졌으나 한겨레신문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 판결문

사건 : 99가합2430 반론보도

원고 : 이

피고 : 한겨레신문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권 근 술

변론종결 : 1999. 4. 28.

주문 : 1.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제25면 우측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이 사건 대상기사인 「어린이 집 ‘비리’ 증언에 분풀이」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 1. 기초사실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한겨레신문 1999. 2. 2.자 제25면에 「어린이 집 ‘비리’ 증언에 분풀이」라는 제목을 단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두 딸을 기르며 집에서 부업을 하는 주부 변 (33·서울 ) 씨에게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3년 동안 집 근처 청룡어린이집에 두 딸을 보내 왔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을 이 곳에 맡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변씨의 걱정은 지난해 11월 관악구의회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면서 비롯됐다. 구의회는 청룡어린이집(원장 이 )이 보육료 외에도 사진값이나 교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원장 이씨가 참석한 가운데 자모회 회장 등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자모회 간부들은 평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온 어린이집의 변칙운영 실태를 증언했다고 한다.

그러자 어린이집 이씨는 자모회 회장을 비롯해 증언을 한 부모들한테 재등록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에 협조한 데 대한 ‘보복’인 셈이다. 변씨도 원장한테 “애들 보기가 그전 같지 않으니 더 좋은 데를 알아 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변씨는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자모회의 홍보담당으로 평소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을 자주 지적해 원장의 눈밖에 나 있었다.

이런 통보를 받고 변씨는 관할 관악구청에 호소를 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구청쪽은 “재등록 여부는 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변씨는 “가난한 서민을 위해 설립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눈밖에 났다고 아이

들을 안 받겠다고 하니 이해되지 않는다.”며 당연히 감독관청인 구청이 나서 어린이집의 이런 태도를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 판단

### 가.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앞에서 본 피고 발행의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보도내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적 주장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주장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할 것이다.

### 나. 반론보도의 내용과 크기 및 게재 방법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기사 내용과 이로 인해 침해된 원고의 법익, 그리고 허위 보도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적 사실의 진술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반론보도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이 상당하다.

(2) 또한 위 반론보도문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에 게재하되, 위 신문 제25면 우측상단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이 사건 기사인 「어린이 집 ‘비리’ 증언에 분풀이」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이 사건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는 것이 원보도문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반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5. 12.

재판장 판사 소 순 무

판사 조 양 희

판사 최 창 영

□

신청인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은 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 5. 25.자 판결 (98카합2593)

##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999년 5월 25일 경기 북부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김 씨가 경기북부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

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증 없는 이상 신청인은 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주간 “의정부시민신문”, “동두천신문”, “양주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경기북부신문사는 1998년 11월 2일 위 각 신문에 『적반하장격의 고발』이라는 제하로 동두천 환경미화원 임금착복 및 시예산 횡령조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원인 신청인이 동두천 환경미화원 임금횡령의혹을 조사하던 중 환경미화원들이 연차수당 미지급분으로 시로부터 받은 돈에서 걷은 불우이웃돕기 및 수재의연금 1백만원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를 취재한 기자에게 폭언을 하며 사이버기자로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기사와 관련 신청인은 1998년 11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98경기중재49, 51, 53)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은 바 있다.

## 판결문

사건 : 98카합2593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김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기북부신문사

의정부시 의정부4동 237의 20

대표이사 신 현 섭

변론종결 : 1999. 4. 20.

주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각 주간신문 “의정부시민신문”, “동두천신문”, “양주신문”의 본문 제2면 우측 상단에 “기자수첩-적반하장격의 고발’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문 본문을 위 각 주간지의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의 이름을 16급 명조체 활자로 각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재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각 주간신문 “의정부시민신문”, “동두천신문”, “양주신문”을 발행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주 각 신문마다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두천신문, 양주신문, 의정부시민신문의 각 제2면 우측 상단 사설란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반론보도문 대체목 부분은 32포인트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기재하고,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의 이름은 26포인트 고딕체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 익일로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 1. 인정사항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 1, 4, 6호증, 소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신청인은 경기북부노동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98. 6.경 동두천시가 청소 대행업체에게 지급한 대행수수료에 포함된 인건비 중 퇴직금 등의 일부분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횡령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동두천민주시민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북부지구협의회, 북부노동조합, 민주택시연맹 경기북부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두천양주지회, 환경미화원 상조회 등과 같이 동두천시 환경미화원 임금착복 및 시예산 횡령조사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왔고, 피신청인은 주간 “의정부시민신문”, “동두천신문”, “양주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위 3종류의 주간신문의 각 1998. 11. 2.자 2면의 우측상단 기자수첩란에 약 35포인트 크기의 활자로 “적반하장격의 고발”이라는 제목을 붙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가로쓰기 상자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요지

① 동두천 환경미화원임금횡령의혹을 조사하는 중에 “동두천 환경미화원 임금착복 및 시예산 횡령조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의 김아무개 씨가 환경미화원들이 시에서 연차수당미지급분으로 받은 돈 가운데 금 1,000,000원을 받아 사용하였다.

② 이 사실을 알고 취재를 하는 한승주 기자에게 김아무개 씨는 사실을 부인하며 폭언을 하다가 사실이 드러나자 “내가 대책위 일로 돈 썼는데 무슨 문제있냐”며 큰소리를 쳤다. 또한 김아무개 씨는 단지 사생활을 침해하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에 대하여 동두천시에 민원을 내고 사이버언론기자라고 고발했다.

③ 환경미화원들이 모은 돈은 연차수당으로 받은 돈 중 10%를 불우이웃돕기 내지는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걷은 돈이다.

④ 이러한 김아무개 씨의 행동은 시민단체의 소장을 맡고 있는 공인으로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투명성 및 노동단체에 속한 노동운동가로서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라. 이에 신청인은 1998. 11. 17.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였으나 (98경기중재 49, 51, 53호), 1998. 11. 26.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기사 내용 중 신청인과 관련한 위 1.의 다.항 전체의 기사 내용은 신청인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기사내용 중 위 1.의 다.항 ④ 부분은 사실적인 주장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나머지 ① 내지 ③ 부분과 같이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문맥은 신청인이 불우이웃돕기 내지는 수재의연금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걷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사실적인 주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그러한 기사에 대해 신청인에게 해

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은 일용 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기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고 신청인이 청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전 입증으로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신청인이 청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신청인의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및 게재방법

신청인 회사의 반론보도의 내용은 위에서 실시한 바에 따라 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은 이 사건 보도의 활자크기 및 자수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5. 25.

재판장 판사 강 영 호

판사 홍 동 기

판사 박 중 욱

□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이상 다른 사람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서울지방법원 1998. 11. 13.자 판결 (98카기10294)

서울고등법원 1999. 5. 27.자 판결 (98나64969)

###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999년 5월 27일 서울성락교회와 교회 담임목사인 김 목사가 「기독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심판 소송 항소심에서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목적이 언론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

반 대중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공,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이상 다른 사람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론 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기사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김과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신청인 교회가 기독교 이단의 반종교적, 반윤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기독교신문은 1998년 8월 5일자에 『한국이단 ‘교주 신격화’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적인 한국 내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귀신론을 이단의 예로서 소개하자 신청인들은 1998년 9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신청을 제기했고(98서울중재180),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중재결정이 내려졌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판결문

사건 : 98카기10294 반론보도청구심판

신청인 : 1. 서울성락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2. 김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홍우

피신청인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7의 3

대표이사 신세원

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진효근, 김기열

변론종결 : 1998. 10. 30.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독교신문의 제9면 좌측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은 제목 부분을 사진식자 32급 고딕체 활자로 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 1. 인정사실

가. 신청인 김 은 1969. 신청인 서울성락교회(이하 신청인 교회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현재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 재단법인 베뢰아아카데미 진흥재단 이사장, 사단법인 기독교인 귀순(월남)용사 선교회 총재, 베뢰아대학원 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중이고, 피신청인은 그 기관지로 기독교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기독교신문 1998. 8. 5.자(1214호) 제9면에 “한국이단 ‘교주 신격화’ 특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피신청인 총회 산하 이단조사연구회의 세미나에서 신청외 심창섭이 강연한 내용을 요약한 형식의 위 기사에서는, 일반적인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을, 교주의 신격화와 완전한 지배구조, 종말론적 사관, 성문란은 물

론 가정과괴 등 반사회적 행동의 정당화 등으로 규정하고, 한국내 기독교 이단들은 위와 같은 특징 이외에도 귀신론 강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청인 김 과 그가 주장하는 귀신론을 이단의 예로서 소개하고 있다.

##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발행한 기독교신문에 공표된 위 기사는 기독교내 이단들의 반종교적, 반윤리적 특징 및 식별법을 나열한 후 귀신론을 주장하는 신청인 김 기동을 한국내 이단의 한 사람으로 소개함으로써, 신청인 김 과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신청인 교회가 이단으로서, 앞에서 나열된 반종교적, 반윤리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그러한 보도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들은 일응 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반론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은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게재방법은 이 사건 기사부분의 위치, 활자크기 및 자수(字數)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1998. 11. 13.

재판장 판사 신성철

판사 박성수

판사 곽병훈

## 2심 판결문

사건 : 98나64969 반론보도청구심판

신청인, 피항소인 : 1. 서울성락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김

## 2. 김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홍우

피신청인, 항소인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7의 3

대표이사 신 세 원

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진 효 근

변론종결 : 1999.4.29.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11. 13. 선고 98카기10294 판결

주문 : 1.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신청인들의 당심에서의 신청취지 확장에 따라, 만약 피신청인이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이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기독신문”을 발행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월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신청취지확장비용 포함)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제1심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독신문”의 제9면 좌측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을 사진식자 32급 고딕체 활자로 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이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기독신문”을 발행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월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신청인들은 당심에서 간접강제신청부분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확장된 신청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 갑 제1 내지 5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신청인 김 ○ ○ 은 1969년 신청인 서울성락교회(이하 신청인 교회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현재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 재단법인 베뢰아아카데미 진흥재단 이사장, 사단법인 기독교인 귀순(월남)용사 선교회 총재, 베뢰아대학원 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중이고, 피신청인은 그 기관지로 주 1회 “기독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기독신문” 1998. 8. 5.자(1214호) 제9면에 “한국이단 ‘교주 신격화’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목록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피신청인 총회 산하 이단조사연구회의 세미나에서 신청외 심창섭이 강연한 내용을 요약한 형식의 이 사건 기사에서는, 일반적인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을, 교주의 신격화와 완전한 지배구조, 종말론적 사관, 성문란은 물론 가정파괴 등 반사회적 행동의 정당화 등으로 규정하고, 한국내 기독교 이단들은 위와 같은 특징 이외에도 귀신론 강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청인 김 ○ ○ 과 그가 주장하는 귀신론을 이단의 예로서 소개하고 있다.

2. 판단

가. 반론보도청구의 당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기독교내 이단들의 반종교적, 반윤리적 특징 및 식별법을 나열한 후 귀신론을 주장하는 신청인 김 ○ ○ 을 한국내 이단의 한 사람으로 소개함으로써, 신청인 김 ○ ○ 과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신청인 교회가 이단으로서, 앞에서 나열된 반종교적, 반윤리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적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그러한 보도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들은 일응 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반론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

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은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가 연구비판의견 또는 견해에 관한 발표를 요약, 인용한 것으로서 반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반론보도청구권의 목적이 언론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이상 다른 사람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기사는 그 전반부에 기독교 이단의 반종교적, 반윤리적 특징에 대하여 열거한 후 신청인 김 과 그의 귀신문을 이단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바, 이러한 전후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김 과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신청인 교회가 앞에 열거한 기독교 이단의 반종교적, 반윤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사실적 주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신청인들의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및 게재방법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들이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게재방법은 이 사건 기사 부분의 위치, 활자크기 및 자수(字數) 등에 비추어 “기독신문”의 제9면 좌측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을 사진식자 32급 고딕체 활자로 하여 게재하기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위 반론보도문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5. 27.

재판장 판사 김재진

판사 박순성

판사 최규홍

□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해 원고 종종이나 우암 송시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8. 12.자 판결 (97가합29791)

서울고등법원 1999. 2. 4.자 판결 (98나47919)

대법원 2000. 2. 25.자 판결 (99다12840)

## 사실개요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000년 2월 25일 우암 송시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 은진송씨 송자각하종친회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이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도내용과 원고 종중 사이에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해 원고 종중이나 우암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보도내용이 조선후기 역사에 관한 고찰로, 당시의 상황을 토론회 형식으로 극화하거나 사료를 요약하여 방영한 것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종중이 거론된 바 없고, 우암이 원고 종중의 선조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현도 사용된 바 없으며, 특히 안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암의 견해가 성급한 효종의 견해보다 신중하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에 의하여 우암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S는 1997년 11월 18일 「TV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 효종대에 논의된 북벌론의 제기와 추진경과 및 의의에 대한 내용의 방송을 하였는데, 원고 종중은 위 보도에서 우암 송시열이 북벌 실패를 두려워하였고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인 것처럼 묘사되었다며 1997년 12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신청을 하였고(97서울중재282), 중재 불성립결정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1,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 1심 판결문

사건 : 97가합29791 반론보도

원고 : 은진송씨 송자각하 종친회

대표자 공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중, 석진강, 송영욱, 정상학, 이유영, 김동섭, 이 율

피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박권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경 국

변론종결 : 1998. 7. 15.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매주 화요일 22:00부터 23:00 사이에 방송하는 ‘TV 조선왕조실록’ 방송프로그램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

이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따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피고는 1997. 11. 1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TV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효종대에 논의된 북벌론의 제기 및 추진 경과와 그 의의에 대한 문제제기, ② 북벌을 위해 효종이 추진한 인재등용, 군제개혁 및 군사훈련의 내용, ③ 효종의 군사적 북벌에 대하여 민생을 이유로 반대하는 대신들과의 대화를 극화(劇化)한 내용, ④ 당시 조선의 경제 상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⑤ 질문자들이 극중 인물인 효종과 송시열에게 북벌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극화한 <북벌 대토론회>, ⑥ 동북아시아의 당시 정세를 통한 북벌의 실행가능성, ⑦ 북벌 추진에 대한 백성들의 입장, ⑧ 효종과 송시열 사이의 기해독대(己亥獨對)를 극화한 내용, ⑨ 북벌론의 역사적 의의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송시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친회이고, 위 방송 내용 중 송시열이 언급된 방송 내용은 ②, ⑤, ⑧로서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효종이 봉림대군 시절 그의 사부로서는 윤선도, 최은, 윤빈, 신석번, 심대부 등이 있었는데 송시열도 인열왕후 사후 병자호란까지 7개월 동안 봉림대군과 사제관계를 맺었다. 송시열은 사헌부장령의 승임을 사양하면서(효종 원년 :1649)에 효종에게 13조의 상소를 올렸는데(이를 己丑封事라고 한다) 그 중 하나가 ‘정사를 닦아 오랑캐를 물리칠 것(修政事以攘夷狄)’이다.

라. 효종은 김자점의 북벌밀고사건 후 낙향해 있던 송시열을 이조판서로 임명한 뒤(효종 10년 : 1659)에 독대하였는데, 독대의 첫부분은 효종이 동북아시아에 대한 국제 정세판단을 언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⑥ 북벌의 실행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로 상세하게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별지 2. 방송내용의 (기해독대) 기재 부분으로 요약되어 방송되었다. 위 독대 뒤 왕자(현종)를 통해 그와 북벌에 관한 밀찰을 교신하였다.

마. 또한 효종은 송시열을 이조판서로 임명한 해 겨울에 그에게 초구(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하사하였다.

## 2. 원고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효종의 북벌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므로 그 추진 과정은 위에서 든 기축봉사, 악대설화, 북벌밀찰, 초구발 등의 자료에 의할 수밖에 없는 바, 이들 자료와 효종과 우암(尤菴) 송시열의 사제 관계 등을 종합하면 우암이 북벌에 적극 찬성하였고, 효종도 북벌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우암과 상의하고, 우암이 북벌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건의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우암이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인 것처럼 방영함으로써 우암의 후손들의 명예가 훼손

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반론의 보도를 구하고 있다.

나. 우암의 북벌론에 대한 학설

우암이 북벌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국내외 사학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여기에서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연구 논문(갑 제10호증)에 나타난 것을 요약·제시하는 것에 그친다.

-존왕양이석 준추대의와 화이의식적 명분론에 바탕을 둔 우암의 북벌론은 대청무력정벌(對淸武力征伐)을 주장하는 효종의 북벌론과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

첫째, 우암은 효종에게 북벌에 앞서 수신(修身)에 정진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북벌사업의 우선 순위로 수신(修身)을 꼽았다.

둘째, 우암은 명(明)에 대한 의리의식에서 북벌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효종은 삼전도(三田渡)의 치욕을 씻고자 함이 우선이었다.

셋째, 우암 등 사림세력은 당시 상황을 평화시대로 파악하여 ‘안민(安民)’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에 반하여, 효종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여 ‘양병(養兵)’을 우선으로 생각하였다.

다. 피고의 방송 내용이 우암 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1) 원고가 들고 있는 악대설화(갑 제1호증), 내사초구발(갑 제3호증), 기축봉사(갑 제4호증)의 각 기재를 면밀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우암은 정유봉사(1657. 8.)에서 군대를 양성하는 것과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로 배치된다(養民養兵必相妨)고 상소를 하였고, 악대설화에서 효종이 득대시 우암의 위와 같은 상소 내용에 대한 대책을 묻자, 우암은 주나라 제도인 보호법(保五法 : 양민 3명 중 1명만 병사로 양성하고, 나머지는 베를 내어 이로써 병사를 양성하는 군제)을 소개하였으나 이 역시 기장을 세운 뒤에라야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며 효종에게 먼저 사실을 없앨 것을 진언하였다.

다음으로, 우암이 초구를 하사받은 후 그 경위를 직접 기록한 내사초구발에서는 우암이 초구 하사를 처음에 사양하자 효종이 북벌을 함께 하자는 뜻으로 내린다고 하자 우암은 그 뜻을 알고 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주자의 말씀을 들어 진언하였다.

끝으로, 위에서 든 수정사이양이적(修政事以攘夷狄)은 주자(朱子)의 주장을 원용한 것으로서 기축봉사 13조의 내용은 성리학에 입각한 내수외양책이다.

위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증거로 제출된 우암의 북벌론에 대한 논문(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을 종합하면 우암은 북벌에 찬성하되 그 방법으로 효종의 수신을 통한 양민을 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우암에 대한 방송 내용을 보건대, 별지 2. 방송내용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우암이 북벌론에 찬성하지만 다만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 효종의 북벌론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토론회 형식으로 극화하거나 효종과 우암 사이의 악대설화 내용을 요약하여 방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들어 원고 주장과 같이 우암이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여 북벌을 반대하는 것처럼 묘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원고는 효종의 북벌에 반대하는 신하들의 탄원 내용이 방송된 직후에 효종과

우암 사이의 토론회 내용이 방송되고, 토론회 내용도 우암의 북벌 방법이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부각시킴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우암이 그 신하들과 같이 북벌에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③ 신하들의 반대 탄원 내용 다음에 반대 이유인 ④ 조선의 경제적 사정이 방송되었고 그 다음에 ⑤ 북벌대 토론회가 방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론회 내용 중 우암의 북벌 방법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도 우암이 자신의 북벌 의지와 북벌 방법의 현실성에 대하여 피력한 점과 위에서 든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 그리고 전체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우암에 대하여 시청자들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4) 더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관련 사료와 논문 그리고 전문 학자의 의견을 들어 효종 시대에 제기되었던 북벌론이 우리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우암에 대한 역사적 사실 또는 평가를 왜곡하거나 왜곡할 위험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방송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우암을 북벌의 반대론자로 묘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8. 12.

재판장 판사 윤 석 종

판사 남 성 민

판사 김 영 학

### 2심 판결문

사건 : 98나47919 반론보도

원고, 항소인 : 은진송씨 송자각하 종친회

대표자 공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이 울

피고, 피항소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박 권 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경 국

변론종결 : 1999. 1. 21.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8. 12. 선고 97가합29791 판결

주문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매주 화요일 22:00부터 23:00까지 사이에 방송되는 'TV 조선왕조실록'

프로그램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취소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유 :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기록에 첨부된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우암(尤菴) 송시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국내외에 대한 방송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7. 11. 1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TV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① 효종대에 논의된 북벌론의 제기 및 추진 경과와 그 의의에 대한 문제 제기
- ② 북벌을 위해 효종이 추진한 인재등용, 군제개혁 및 군사훈련의 내용
- ③ 효종의 군사적 북벌에 대하여 민생을 이유로 반대하는 대신들과의 대화를 극화(劇化)한 내용
- ④ 당시 조선이 경제 상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 ⑤ 질문자들이 극중 인물인 효종과 우암 송시열에게 북벌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극화한 <북벌 대토론회>
- ⑥ 동북아시아의 당시 정세를 통한 북벌의 실행가능성
- ⑦ 북벌 추진에 대한 백성들의 입장
- ⑧ 효종과 우암 송시열 사이의 기해독대(己亥獨對)를 극화한 내용
- ⑨ 북벌론의 역사적 의의

나.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우암 송시열이 언급된 내용은 ②, ⑤, ⑧로서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특별 및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암 송시열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이에 기한 역사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 ① 효종이 봉림대군 시절 그의 사부로서는 윤선도, 최은, 윤빈, 신석번, 심대부 등이 있었는데, 우암 송시열도 인열왕후 사후 병자호란까지 7개월 동안 봉림대군과 사제관계를 맺었다.
- ② 우암 송시열은 효종 원년인 1649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의 승임(陞任)을 사양하면서 효종에게 13조의 상소를 올렸는데(이를 己丑封事라고 한다) 그 중 하나가 '정사를 닦아 오랑캐를 물리칠 것(修政事以攘夷狄)'이다.
- ③ 효종은 김자점의 북벌밀고 사건 후 낙향해 있던 우암 송시열을 이조판서로 임명한 뒤 효종 10년에 그와 독대하였고(이에 관한 내용을 '己亥獨對' 또는 '幄對說話'라고 한다), 그 후 효종은 왕자(현종)를 통해 그와 북벌에 관한 밀찰을 교신하였다.
- ④ 또한, 효종은 송시열을 이조판서로 임명한 해 겨울에 그에게 초구(貂毳 :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갓옷)을 하사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효종의 북벌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므로 그 추진 과정은 앞서 본 기축봉사, 악대설화, 북벌밀찰, 초구발 등의 자료에 의할 수밖에 없는 바, 그런데, 이들 자료와 효종과 우암 송시열의 사제 관계 등을 종합하면 우암이 북벌에 적극 찬성하였고, 효종도 북벌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우암과 상의하고, 우암이 북벌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건의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우암이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인 것처럼 방영함으로써 우암의 후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반론의 보도를 구한다.

### 3. 판단

#### 가. 반론보도청구권의 의미

(1)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 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입는 피해를 참으로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 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방송법 제41조는 방송으로 피해를 받은 자에게 반론보도의 방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편면적인 정보의 흐름을 수정하여 보다 진실되고 공익에 합치되는 정보의 흐름을 꾀하는 반론권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방송법 제41조 제1항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우선 ‘사실적 주장’에 한하여 반론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러한 사실적 주장 내용에 개별적으로 관련되고 그로 인하여 명예나 신용 등 일정한 권리나 법익의 침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리하여, 방송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항의 주장으로서, 그 존재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가치평가적 인식의 표현인 의견, 감정, 논설, 비평 등과 대비되는 것이고, 양자의 구별은 당해 보도나 표현의 진정한 의도, 그것이 공표된 방송의 성격 및 보도 경위, 주된 시청자층, 사회 일반의 가치관 및 언어생활상의 의미, 전후의 문맥과 행간에 내포된 의미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서울고등법원 1992. 8. 21.자 91라161 결정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방영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 나라가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대두된 북벌 논의의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후기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다시 세울 것인가(國家再造)'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암이 거론된 부분을 살펴보면, 우암은 청나라가 척화인사로 지목한 사림세력으로서 효종과 마찬가지로 북벌론에 찬성하였지만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양병(養兵)'을 우선으로 생각한 효종과는 달리 '안민(安民)'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당시의 상황을 토론회 형식으로 극화하거나 효종과 우암 사이의 악대설화 내용을 요약하여 방영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축봉사, 악대설화, 북벌밀찰, 초구발 등의 사료에 기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방영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우암은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이다.'라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사료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앞서 본 기획 의도에 따라 효종과 우암 간의 입장 차이에 중점을 둔 것일 뿐이다. 결국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별지 제1의 내용은,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피고 나름의 가치평가와는 달리, '당시 특별 자체를 반대한 신하들이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벌을 해야 한다는 효종의 생각에 찬성한 우암의 기본적인 입장이 더욱 강조되었어야 한다'는 원고 나름의 가치평가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적 주장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방영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은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원고가 방송법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명예 등의 인격권은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이고 사람은 사망에 의하여 당연히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인격권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사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300년도 넘는 세월 이전에 이미 사망한 우암의 인격권 자체를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설사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법 제308조나 저작권법 제14조에 기하여 사법상의 소송에 있어서도 사자(死者) 자신의 인격권을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자(死者)를 대신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현행 실정법은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자(死者) 자신의 인격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우암 자신의 인격권에 관한 권리 자체를 행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한도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우암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단체이므로(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다1090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 등 참조), 원고 자신의 인격권도 이러한 종중의 고유한 목적에 비추

어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함에 있어서 원고 중증을 거론한 바 없음은 분명하고, 특히 그 내용 가운데에 우암이 원고 중증의 선조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현(예를 들면, 은진송씨)도 사용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보도 내용과 원고 중증과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보도내용, 특히 그것이 조선 후기의 역사에 관한 고찰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위 보도내용과 원고 중증 사이에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음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명예훼손이란 사람(중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7. 9.자 97마634 결정 등 참조), 설령 원고 중증의 구성원인 우암의 후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그들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침해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원고 중증의 목적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 기획의도, 주된 시청자층의 수준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방영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원고 중증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보기에 따라서는 ‘안민(安民)’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암의 견해가 성급하게 ‘양병(養兵)’을 내세우는 효종의 견해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우수한 것이라는 가치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자료, 즉 당시의 피폐한 경제 상황과 백성들의 입장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우암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우암은 조선 후기의 대정치가로서 국가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므로, 우암이 사망한 때로부터 무려 3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우암의 사상과 행적은 단순히 원고 중증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공영방송인 피고가 앞서 본 기획 의도 하에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써 우암을 다룬 것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원고는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그 이유 설시는 달라도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4.

재판장 판사 김 재 진

판사 황 병 하  
판사 조 영 철

대법원 판결문

사건 : 99다12840 반론보도

원고, 상고인 : 은진송씨 송자각하 종친회

대표자 공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중, 석진강, 송영욱, 정상학, 이유영, 이 율, 김무진

피고, 피상고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박 권 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경 국

원심판결종결 : 서울고등법원 1999. 2. 4. 선고98나47919 판결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방송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의 후손들로 구성된 중중의 사실 피고가 1997. 11. 18. 22:00경부터 1시간 가량 ‘TV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조선 효종대에 논의된 북벌론의 제기와 추진 경과 및 의의에 대한 문제제기, ② 북벌을 위하여 추진한 인재등용, 군제개혁 및 군사훈련 ③ 효종의 북벌계획에 대하여 민생을 이유로 반대하는 대신들과의 대화를 극화(劇化)한 내용, ④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⑤ 현대의 질문자들이 북벌에 관하여 극중 인물인 효종과 우암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을 극화한 북벌 대토론회, ⑥ 동북아시아의 당시 정세를 통한 북벌의 실행가능성, ⑦ 북벌 추진에 대한 백성들의 입장, ⑧ 효종과 송시열 사이의 기해독대(己亥獨對)를 간추려 극화한 대화, ⑨ 북벌론의 역사적 의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우암이 직접 언급된 곳은 위 ②, ⑤, ⑧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 판시 별지 2의 기재와 같으며, 한편 북벌 및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암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이에 기한 역사적 사실로 우암은 효종이 봉림대군 시절 그의 사부였고, 효종 원년인 1649년 효종에게 ‘정사를 닦아 오랑캐를 물리칠 것(修政事以攘夷狄)’이 포함된 13조의 상소(己丑封事)를 올렸으며, 이조판서로

임명된 뒤 효종과 독대(己亥獨對 또는 幄對說話)하고 북벌에 관한 밀찰도 받았으며, 효종으로부터 초구(貂毳)를 하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악대설화 등의 사료 중에는 우암과 효종이 서로 북벌의 의지를 확인하고 방법을 의논하는 등 우암이 효종의 북벌계획에 적극 찬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료 중 이와 같은 부분을 생략한 채 우암과 효종 사이의 의견차이에만 중점을 두고서 우암이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였고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인 것처럼 제작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우암의 후손들로 구성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프로그램은 기획의도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나라가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대두된 북벌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후기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다시 세울 것인가(國家再造)’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고, 그 과정에서 우암이 거론된 부분은 기축봉사, 악대설화, 북벌밀찰, 초구발 등의 사료를 기초로, 우암은 청나라가 척화인사로 지목한 사림세력으로서 효종과 마찬가지로 북벌계획에 찬성하였지만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양병(養兵)을 우선으로 생각한 효종과는 달리 안민(安民)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당시의 상황을 토론회 형식으로 극대화거나 효종과 우암 사이의 악대설화의 내용을 요약하여 방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우암은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이다.’라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획의도에 따라 효종과 우암 사이의 입장 차이에 중점을 두었을 뿐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은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종종이 거론된 바가 없고 그 내용 가운데에 우암이 원고 종종의 선조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현(예를 들면 은진 송씨)도 사용된 바가 없으므로 그 보도내용과 원고 종종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보도내용 특히 그것이 조선 후기의 역사에 관한 고찰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보도내용과 원고 종종 사이에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 종종의 목적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과 기획의도 및 주된 시청자층의 수준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하여 원고 종종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안민(安民)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암의 견해가 성급한 효종의 견해보다 신중하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자료, 즉 당시의 피폐한 경제 상황과 백성들의 입장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에 의하여 우암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원고가 방송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우암과 효종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악대설화의 내용을 요약해 극화한 부분이 있음이 분명하고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악대설화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가치평가 혹은 의견이나 희망의 표시라기보다는 악대설화에 기재된 역사적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획의도에 따라 효종과 우암 사이의 입장 차이에 중점을 두었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시 부분에는 방송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방송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2. 25.

재판장 대법관 조 무 제

주심 대법관 김 형 선

대법관 이 용 훈

대법관 이 용 우

□

이 사건 방송이 2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2차방송은 1차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는 방송 내용을 포괄하여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며, 반드시 프로그램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22.자 판결 (99카합91)

서울고등법원 1999. 10. 14.자 판결 (99나27325)

대법원 2000. 3. 24.자 판결 (99다63138)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000년 3월 24일 종교단체인 ‘세계정교’ 총령본존인 하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방송이 2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는 한 번에 포괄하여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며, 2회에 걸쳐 반론보도문을 방송

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용 부분을 넘어서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부분은 대부분이 원 방송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적 주장과 관련성이 없거나 신청인의 의견 내지 가치평가이거나, 신청인의 사실적 진술에 의한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충적·추가적 진술이거나 제3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대로 방송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2회에 걸친 원 방송 중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주된 부분의 내용 등을 참작하면 반론보도요구문을 적절히 삭제·수정, 제한하여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반론보도 방송의 실행 방법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원 방송에서 피신청인의 주된 사실적 진술이 자막의 방식으로 방송된 것도 아니므로 반론보도 방송의 실행방법도 낭독과 함께 자막으로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MBC는 1998년 11월 24일 「PD수첩」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성관련 비리, 현금 및 재산관련 비리, 학력에 대한 의혹 등을 보도하였고, 이어 12월 22일에도 앞서 한 보도내용을 요약해 방송하면서 신청인이 성폭행 및 금품갈취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각 보도에 대해 1998년 12월 24일과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98서울중재327, 329) 모두 중재불성립결정 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는 인용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방송횟수 및 방법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상소하였고, 2심 법원도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 1심 판결문

사건 : 99카합91 반론보도심판청구

청구인 : 하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청구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득 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변론종결 : 1999. 4. 1.

주문 : 1. 피청구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방송하는 23:00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청구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 화면에는 두 줄로 "세계정교 하 총령본존의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2목록 반론보도요구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은 제1항의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 화면에는 두 줄로 "세계정교 하 총령본존의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3목록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 만약 피청구인이 위 제1, 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은 위 각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일까지 청구인에게 각 금 1억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 하 는 종교단체인 '세계정교'의 총령본존이고, 피청구인은 방송매체를 운영하면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998. 11. 24.자 보도내용

피청구인 방송사는 1999. 11. 24. 23:00부터 방송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PD 수첩'에서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이라는 제목으로 서두에 "세스팔다스신이 세계를 구한다? 세계정교를 아십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라는 교주에게 재산은 물론 성착취까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세계정교의 실체를 PD 수첩에서 파헤쳤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는 교리를 내세운 세계정교라는 한 신흥종교의 교주가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하총령은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살아있는 신임을 자처하며 절대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들 성폭행 피해자들 가운데는 모녀가 당한 경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와 인류를 구원할 살아있는 신으로, 화한뫼루라는 전통무예의 창시자로 유난히 민족정신과 가정의 화목을 강조해 왔던 세계정교의 하 총령.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신도들에 대한 성폭행과 헌금강요 그리고 석연치 않은 과거행적 등이 있었습니다."라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1)청구인의 성(性) 관련 비리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피해자) 박씨는 ...시댁문제로 고민을 하던 끝에 하총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세계정교에는 총령이 신도들을 직접 접견하는 성친 의식이 있는데 이를 빌미로 박씨를...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총령은 그후 박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시자를 시켜 낙태수술을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결혼생활을 계속하면 남편이 죽는다며 이혼을 하게 한 후 박씨로 하여금 아예 방을 얻어 살도록 하고 수시로 불러 성폭행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박씨의 어머니 김씨가 차마 딸에겐 말을 못했다며 자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김씨는 ...하총령의 지방순례에 따라 갔다가 같은 일을 (또)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총령은 주로 성친을 빌미로 성경루로 부르거나 지방순례에 동행한 여신도들을 호텔 방으로 불러 병을 치료해 준다면 눅게 한 후 겁탈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허리가 아파 아는 이의 소개로 하총령을 찾아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주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총령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어렵게 탈출했다는 한 피해자는 하총령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시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때 “...중생 모든 만인에게 자기 손이 가면 평생의 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는 것을 강조하죠”, “...네가 전생에 내 부인이었다.”는 등의 말을 하는 피해자들과의 인터뷰장면을 함께 방송하였다.

(2) 현금 및 재산관련 비리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그(청구인)는 자신을 만나는데도 성친 비라고 해서 그때마다 돈을 받고 또 신도들에게 액을 물리쳐 준다는 명목으로 각종 제금을 올리도록 종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탄단절 행사 등에서는 자식과 가정이 잘 되라는 징을 한 번 치는데도 무려 330만원을 제금으로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하총령의 말이 담긴 경전과 각종 책자들을 몇 만원씩 받고 신도들에게 사도록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매년 탄단절에는 계움지라고 해서 종이 한 장에 4만8천원씩 112장을 5백만원이 넘는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하총령에 관한 기사가 실린 모월간지를 4만8천원에 팔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호를 지어주는데도 돈을 받고 제금도 가족단위가 아닌 가족 수대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총령은 다른 사업이나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성경루를 기점으로 바로 옆의 시자들이 사는 집 등 인근 한옥을 몇 년째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창성동 일대에만 하총령 명의로 다섯 채, 시자인 손모 씨 명의로 두 채 총 7채가 등재돼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조금 떨어진 통인동에는 극제본청과 만세전이라고 불리는 세계정교 소유의 건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각각 시자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세금 때문에 명의로 이렇게 해놓았을 뿐 하총령 소유일 것이라고 합니다. ...재산을 추적해 본 결과 드러난 것만 해도 하 총령은 서울에만 본인 및 차명 부동산 9건 지방엔 본인 명의의 부동산 8건 그리고 이밖에 차명 부동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하총령은 매년 탄단절 행사 때마다 민족통일을 강조하면서 신도들에게 통일성금을 내도록 종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청구인)는 신문에 고정 칼럼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재정이 어려운 신문사가 광고를 실어주는 대가로 지면을 내준 것이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때 “(청구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자들 명의로... 세금관계 때문에...각서를 받아 놓았더라구요”라는 등의 말을 하는 제보자들이 인터뷰장면도 함께 방영하였다.

(3) 청구인의 학력과 관련된 의문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그(청구인)의 공식적인 이력서를 보면 모 대학 법정대 법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도들에게는 형편이 어려워 장학생으로 진학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면 도무지 믿기지 않을뿐더러 대학교에 그의 학적을 여러 차례 확인해 본 결과 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총령 측에서는 학력위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4) 세계정교의 교리 및 경전의 표기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하 총령은 ...10년 맨발수행 끝에 신의 계시를 받아서 세계정교를 창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정교가 모시는

신은 7개의 별을 가진 세스팔다스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세스팔다스신은 ‘스스로 팔팔하게 다스리는 신’이라고 말하는 세계정교의 신도와의 인터뷰장면을 함께 방송하였고, 또 “1940년 생인 하총령은 그 동안 자신이 세계를 구원할 살아있는 신이라며 신도들에게 항상 4배를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음력 생일인 1월 1일은 탄단절이라고 하여 매년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를 숭배하는 의식 또한 대단합니다...”라는 보도를 하였으며, “그(청구인)가 경전 등에 써온 한글표기는 한글학회에서조차 전혀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보도한 후 “이런 글자는 존재한 적이 없고... 조선 초기 문헌에서도 이런 글자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한글학회 회장과의 인터뷰장면을 방송하였다.

(5) 그밖에 피청구인은 “하총령은 파한뫼루라는 동작 역시 10년 맨발수행 끝에 꿈에 나타난 신의 계시를 받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를 잘 아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후 “우리 아버지(청구인) 같은 인내심으로 봐서는 맨발로 1년이 아니라 하루도 못 다닐 것 같아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아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청구인의 딸과의 인터뷰장면을 방영하였고, “그(청구인)은 각종 군소 언론에 글을 게재함으로써 그 위세를 과시해 왔습니다. 그는 현재 B일보의 전신인 검경일보의 주필로도 활동해 왔었는데 정작 신문사 측에서는 별 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총령은 또 행사 때마다 유명인사들을 동원하는 수법으로 위세를 과시해 왔는데 본인들은 사례를 받고 참가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는 또 세계평화운동을 한다며 고향 선배인 전직 3선 국회의원인 강모 씨를 행사에 초대해 신도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보도하였고, 또 피청구인 소속 취재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만나려고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다. 1998. 12. 22.자 보도내용

피청구인 방송사는 또 1998. 12. 22. 23:00부터 방송된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위 1998. 11. 24.자 보도내용을 줄여서 방송하면서 청구인의 성폭행 및 금품갈취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 2.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 중 세계정교의 실체 및 교리 또는 청구외 최정희, 강민경, 김봉옥과 관련된 부분은 청구인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먼저 청구인이 세계정교의 교주(총령본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세계정교의 실체 및 교리에 관한 부분과 청구인 개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최정희, 강민경, 김봉옥과 관련된 부분은 청구인 개인의 비리나 의문점과 관련되어 언급되어 있고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도 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들의 언행과 관련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한다고 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인용되는 부분

(1) 앞서 인정한 방송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방송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별지 제2, 3목록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 중 당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별지 제1목록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하는 반박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론보도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걸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반박주장이 그 내용이 그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뿐만 아님,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반론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청구인은, 위 방송사가 이 사건 방송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 측에게 수 차례 반론의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끝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는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기각되는 부분

청구인은 위 인용부분 이외에 세계정교의 성립과정과 교의 및 교기(별지 제2목록 제2항, 제3목록 제2, 3항 중 일부), 이 사건 방송보도의 취재방법 및 취재과정(별지 제2목록 제4, 8, 9, 10, 16항, 제3목록 제5, 6항 중 각 일부), 이 사건 방송보도의 표현방법(별지 제2목록 제7항), 피해자들 제보의 신빙성 여부(별지 제2목록 제17, 20, 27, 28, 32, 33항, 제3목록 제11항), 제보자들 개인의 신상(별지 제2목록 제22, 24, 28), 이 사건 방송보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별지 제2목록 제36항), 세계정교 경전의 한글표기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별지 제2목록 제39항), 청구인의 출생시 일화(별지 제2목록 제43항)에 대하여도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앞서 인용한 범위를 벗어나는 제보자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는 만일 반론보도가 허용된다면 제보자들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이 중대·명백하게 침해됨이 예상되는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도 앞서 인용한 범위를 벗어나는 한 피청구인의 사실적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청구인의 주관적 의견 또는 평가, 반박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별지 제1 반론보도문의 방송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

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피청구인이 반론보도를 명한 기간 내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그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22.

재판장 판사 길 기 봉  
판사 이 건 배  
판사 고 창 후

## 2심 판결문

사건 : 99나27325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항소인 : 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청구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변론종결 : 1999. 9. 30.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22. 선고 99카합91 판결

주문 : 1.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신청인은 제1심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 화면에는 두줄로 “세계정교 하 총령본존의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반론보도요구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 화면에는 두줄로 “세계정교 하 총령본존의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제3목록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4. 만약 피청구인이 위 제2, 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은 위 각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일까지 각 신청인에게 각 금 100,0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중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피청구인’을 ‘피신청인’으로 각 고치고, ② 신청인이 구하는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제2목

록(이하 별지 2목록이라고만 한다) 반론보도요구문 및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이하 별지 1목록이라고만 한다) 반론보도문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신청인이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부연 또는 보충하거나 새로이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하는 판단

가. 신청인은 먼저, 별지 2, 3목록 각 반론보도요구문 중 별지 1목록 반론보도문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하 나머지 신청 부분이라고만 한다)도 피신청인이 한 이 사건 원방송에 대한 반박이거나 그 해명적 진술, 보충적 진술 또는 설명적 진술로서 모두 사실적 진술이고, 제보자들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원 방송이 2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중 1998. 11. 24.자 방송이 약 60분 동안, 같은 해 12. 22.자 방송이 약 10분 동안 실시된 이상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신청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차례로 나누어 별지 2목록 반론보도요구문과 별지 3목록 반론보도요구문 각 전부를 순차 방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원 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반론보도문의 내용도 이의의 대상인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곧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보충적 또는 추가적 진술만이 허용되고 신청인의 개인적 의견이나 가치 평가는 포함시킬 수 없으며 또한 명예훼손 등 제3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법한 내용은 포함될 수 없고, 나아가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공표된 원 보도의 기사 또는 방송 전체가 아니라 이의의 대상이 된 사실적 주장 부분의 양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원 보도의 이의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는 바,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되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대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건대, 신청인의 위 나머지 신청 부분은 그 대부분이 이 사건 원 방송의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적 주장과 관련성이 없거나, 신청인의 개인적인 의견 또는 가치 평가이거나, 신청인의 사실적 진술에 의한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한도를 넘는 보충적 또는 추가적 진술이거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그대로 방송된 경우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2회에 걸친 이 사건 원 방송 중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주된 부분은 당원이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에 실시한 정도이므로, 위와 같은 범리에 따라 별지 2, 3목록의 각 반론보도요구문을 적절히 삭제 수정하여 별지 1목록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제한하여 인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원 방송이 2회에 걸쳐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그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

우에 있어서는 1, 2차 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는 한 번에 포괄하여 행하는 것이 합당하여 피신청인으로서는 별지 1목록 반론보도문을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와 반대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문의 방송에 앞서 신청인의 반론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사전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반론보도문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신청인으로서는 법원이 명한 반론보도문을 그대로 방송하여야 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신청인의 반론이 허위 또는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는 비난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적합한 반론보도라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되는 한도 내에서는 피신청인의 사전 방송은 당연히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원이 반론보도문을 인용함에 있어 굳이 그와 같은 사전 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은 명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을 방송함에 있어 낭독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그 내용을 화면에 자막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까지 신청하고 있으나, 방송에서 반론보도의 실행 방법은 통상 방송사의 아나운서, 진행자가 있는 방송의 경우에는 그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이 사건 원 방송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주된 사실적 진술이 화면에 자막 처리하는 방법으로 방송된 것도 아니므로 신청인의 위 신청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 반론 방송이 이 사건 원 방송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반론보도문이 방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 방송이 이루어진 같은 시각에 행하여질 'PD 수첩' 프로그램 내에서 이 사건 반론 방송이 실시되는 것으로써 이 사건 반론 방송은 이 사건 원 방송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하도록 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실제에 있어 피신청인으로서의 위 프로그램의 중간에 이 사건 반론 방송을 실시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모양이 될 수 있어 불리할 것이므로 위 프로그램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이를 시행할 것이 예상되고 이 사건 반론 방송은 그로써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닦하는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14.

재판장 판사 김 재 진

판사 박 순 성

판사 최 규 홍

대법원 판결문

사건 : 99다63138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상고인 : 하

피신청인, 피상고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성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9. 10. 14. 선고 99나27325 판결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판결 참조),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3항).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1998. 11. 24. 23:00경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PD 수첩'에서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종교단체인 세계정교의 총령인 신청인에 대하여 성관련 비리, 현금 및 재산관련 비리, 학력에 대한 의혹, 세계정교의 교리 및 경전의 표기, '파한머루'라는 동자, 언론이나 유명인사를 이용한 허세적 행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를 하고, 또 1998. 12. 22. 23:00경 같은 프로그램인 'PD 수첩'에서 앞서 한 보도내용을 요약해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성폭행 및 금품갈취 의혹에 대하여 보도한 사실을 인정하 다음, 신청인은 그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그 판시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그 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반론보도로서 인용부분뿐 아니라 별지 제2, 3목록 기재 반론보도요구문 전부를 원 방송에 대응하여 2회로 나누어 순차로 방송하여야 하고, 또 반론보도는 보도문의 낭독뿐 아니라 자막도 함께 표시하여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하며, 반론보도의 방송에 앞서 반론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사전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판결주문이나 반론보도문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보도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인용부분을 넘어서 나머지 신청부분은 대부분이 원 방송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적 주장과 관련성이 없거나, 신청인의 의견 내지 가치평가이거나, 신청인의 사실적 진술에 의한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충적·추가적 진술이거나, 제3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대로 방송될 경우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및 2회에 걸친 원 방송 중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주된 부분의 내용 등을 참작하면, 별지 제2, 3목록 기재 반론보도요구문을 적절히 삭제 수정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제한하여 인용함이 상당하다. 또 이 사건 원 방송이 2회에 걸쳐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그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 2차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는 한번에 포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 반론보도 방송의 실행방법도 통상 방송사의 아나운서나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원 방송에서 피신청인의 주된 사실적 진술이 자막의 방식으로 방송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낭독과 함께 자막으로도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반론 방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방송이 이루어진 같은 시각에 행하여질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원 방송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반드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으로서 법원이 명한 반론보도문을 그대로 방송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신청인의 반론이 허위 또는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거나, 비난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적합한 반론보도라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되는 한도 내에서는 피신청인의 사전 방송은 당연히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게 하면서 굳이 그와 같은 사전 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은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반론보도청구권 및 관련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 지적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의 첫머리에 있는 두 문단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 방송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 게재를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위를 알리는 도입부분일 뿐이어서 신청인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의 반론보도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반론보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배상금을 1일 500만 원으로, 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간접강제 배상금액의 결정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배상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제1심이 정한 배상금액이 부당하게 과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

단하여 증액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기에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24.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송진훈

□